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초안
설명 자료**

2014. 8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준비 TF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 목차 >>

1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준비 배경

2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쟁점

3

• 사회적경제기본법 소개와 비교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소개

1. 설립



2. 설립 취지

위상

- 사회경제조직 연합조직의 연대조직

목적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

역할

-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 주체들의 부문과 지역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

3. 회원단체(44개 조직)

연합조직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실업단체연대,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YWCA전국연맹,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나눔의집 협의회,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환경정의,

전문·기능조직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사회투자지원재단, 협동조합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함께일하는재단, 농업농민정책연구소,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풀뿌리사람들

단위조직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주민신협
- 화랑신협
- 논골신협
- 안중제일신협
- 경동신협
- 동작신협
- 장안신협
-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지역 네트워크

-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

4. 규모(2013년)



885,200 명



2,464 개
(21개연합조직,지역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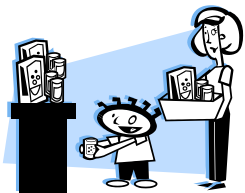
5,163 명



37억 8,366만원



1조 8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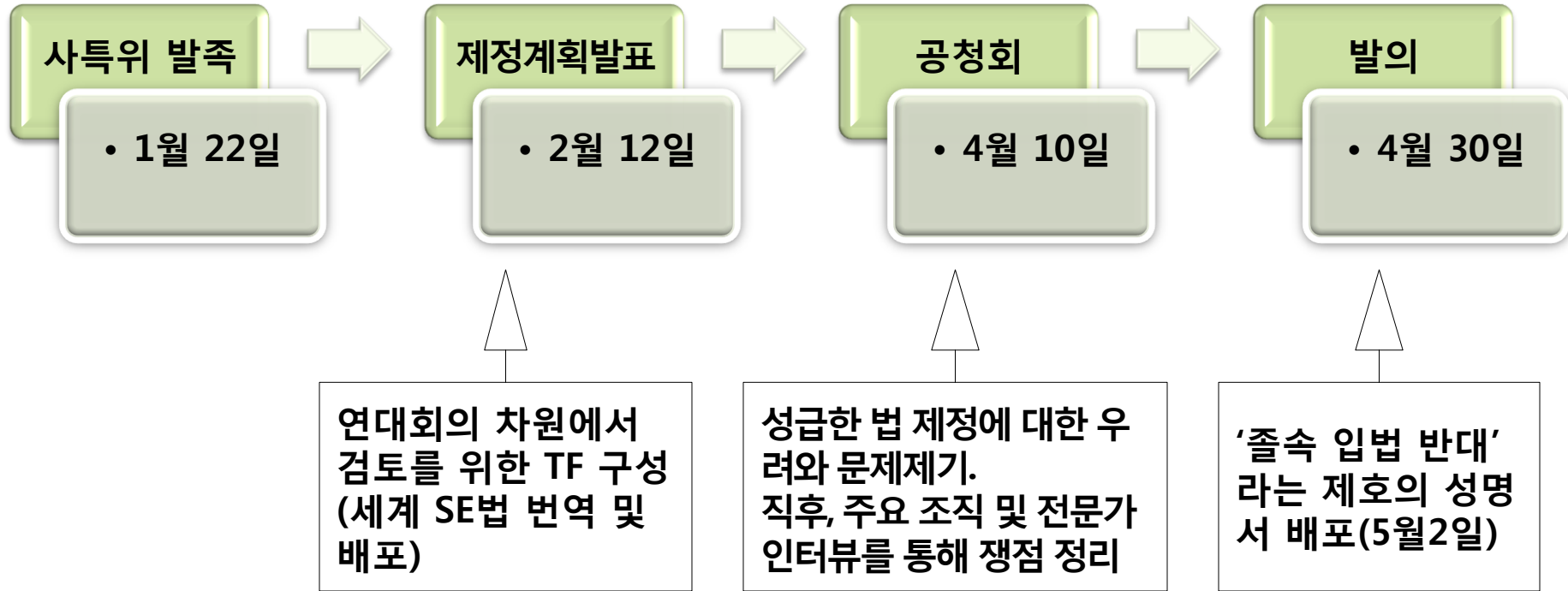


4억 3천만원('12 / 6개)
3억 5,600만원('13/7개)

*2013년 조사 당시 40
개 단체 중 34개 기준)

하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준비 배경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국면의 시작



연대회의의 내부 조차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도출된 쟁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였음. 이에 7월 9일 연대회의의 정기총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흐름에 적극 개입할 것을 결정하고, 대응 기초를 판단하기 위해 독자적인 안을 만들 것을 결정함.

2. 최소 공감대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

사회성 획득

-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유용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법적으로 인정

보편성 부여

- 사회적경제의 보편적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상의 구분을 극복하고 통합적 사고의 계기 부여

개별법 극복

-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개별법의 편차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제공

3. 년내 입법을 둘러싼 논점

YES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의 통합적 조율 환경 조성
- 개별법 한계 극복 - 금융, 공공조달 등 신규지원 정책 도입
- 정부주도에 의한 사회적경제 발전 현실을 인정하고 주체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자.

NO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및 개별 부문의 성장 단계 불균형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 조직범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가능성
- 개별법의 시행 시점과 그 성숙도 차이-> 개별법 극복 방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인식 공유 부족

4.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응을 위한 원칙 수립

1. 적극개입

- 법률 제정 필요 - 청원 입법
- 입법 저지 필요 - 압박과 명분 확보

2. 논점 마련

- 제정 또는 저지에 따른 이유와 내용
- 내용의 우선 순위

3. 의견 수렴

- 부문과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 다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의 확정

5.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초초안의 한계

시간 제약

- 7월 정기총회 직후 가동
- 개별법의 한계, 개별법 간의 상호 충돌지점 파악 등에 있어 충분한 분석과 심도 깊은 논의가 뒷받침 되지 못함.

내용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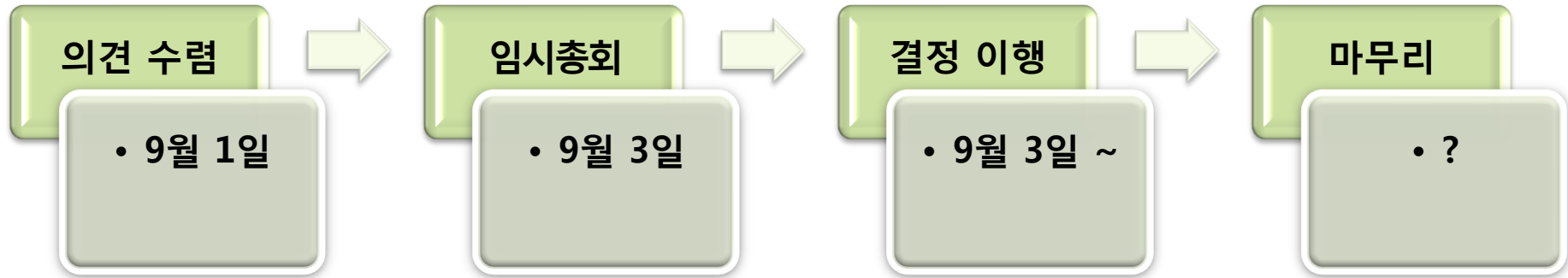
- 변호사 및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 경험자로 구성하였으나 포괄 범위의 방대함으로 심도 깊은 내용 마련이 부족

내부 합의

- TF 성원들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이슈가 많았음.
- 소수의견 존중,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준을 모색

1. 사회적경제 진영이 중심으로 가져가야 할 내용에 대한 모색
2. 보편적 수준에 대한 모색

6. 향후 일정



1. 부문 및 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2. 다양한 주체에 의한 법안의 마련이나 발의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3. 법 제정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
4. 정당 및 정부 관계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역할 수행 등

둘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쟁점
- 부문과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

주요 이슈	검토가 필요한 측면
법률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법 vs 매개법률(개별법 설치의 근거)
정의와 기본원칙	<p>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조직-기본원칙의 유기성 확보</p>
사회적경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vs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단 기준 ▪ 개별법의 열거 방식에 의한 정의 방법의 타당성
사회적경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극복하고 권한을 갖는 위원회 ▪ 시민주도성이 보장되는 위원회 구성 ▪ 내부의 집행 구조 마련

주요 이슈	검토가 필요한 측면
사회적경제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성격(인내자본/투자기금/간접금융) ▪ 기금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 기금의 유통 체계와 방식
통합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에 의한 지원 vs 당사자 조직의 필요 해결 ▪ 지원기관의 역할 범위 ▪ 통합 vs 대상별 지원기관 분화와 확대 ▪ 법률에 지원기관 명시 여부
우선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 기준 vs 사회적 기준 ▪ 개별법률의 근거 명시 vs 실행의 구체성 명시
국가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통제권은 누구에게 ▪ 중앙집중화 vs 지역 자치 계획 ▪ 이해관계자의 계획 수립 개입력 확보

셋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소개와 비교

1. 법안 체계 (6장 36조, 부칙 4조)

내용	조문
총칙	1조(목적) - 2조(정의) - 3조(기본원칙) - 4조(국가 등의 책무) -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 7조(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8조(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10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 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 13조(위원회 구성) - 14조(상임위원회) - 15조(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 16조(협의 및 조정) - 17조(공무원 파견 요청) - 18조(사회적경제 조직협의체) - 19조(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 기금	20조(사회적경제 금융의 제도 정비) - 21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 22조(기금의 용도) - 2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법안 체계

내용	조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	24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25조(시설비 지원) - 26조(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 27조(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특례) - 28조(교육 훈련 지원) - 2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의 촉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30조(운영의 공개) - 31조(경영공시) - 32조(외부감사를 통한 투명 경영)
보칙	33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 34조(국회보고) - 35조(벌칙) - 36조(과태료)
부칙	1조(시행일) - 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 3조(사회적경제위원의 설립 및 준비와 경과조치) - 4조(다른 법률의 개정)

2. 법률의 성격 및 목적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매개법률 > 작용법률</u> :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법률들에 대한 기본이념 제시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법률 < 작용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법률 < 작용법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공동체 조성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 촉진, 지원정책 및 생태계 조성, 민관협치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u>국민경제 균형 발전과 경제민주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생태계 및 정책추진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일자리 창출 도모 • <u>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u>

3. 사회적경제 정의 및 기본원칙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u>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한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혜협력, 사회연대적 관계에 기초한 <u>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과 연대, 자기혁신과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u>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경제활동</u>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u> • 국가등으로부터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 • <u>이윤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용, 배분</u> • <u>다종의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우선 추구</u> • 국가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 <u>다종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u> • <u>이익의 재투자, 기여에 따른 배분</u> • <u>공동유대, 공동체역량 기반한 지역사회의 선순환적인 발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적 가치 실현</u> • <u>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u> • <u>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u> • <u>이윤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 사용</u> • <u>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u>

4.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및 범주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관련 개별법률 등에 따른 조직 • <u>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 및 단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적경제기업</u>: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연합회 • <u>그 외 사회적경제조직</u>: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개별법률 등에 따른 조직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연합회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농어업법인등 • SE 전국,지역,업종 부문연합회 • <u>사회적경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단, 재단, 공제회 등</u> * <u>법 시행 전 관련 개별법률상 사회적경제조직의 근거법률과 정관 등의 사회적경제 기본원칙에 따른 개선의무 규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연합회 • 사회적기업, 협회 • 농어업법인등 •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연합회 • 자활기업 • <u>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u> • 마을기업 • 농어업법인등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경제 실현 및 지원조직

5. 사회적경제위원회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자문위원회 •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자문위원회 •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이내 • 민간 1/2 이상(정부위원, 민간위원, 전문가위원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명 이내 • 민간 1/2 이상(정당 추천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 이내 • 민간 1/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인 (민간) • 부위원장 3인(주요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인 (민간) • 부위원장 3명(주요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인 (민간) • 부위원장 1인(기재부)
상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 7인 이내(상임위원2인) • 민간과 주요 부처장 • 민간이 상임위원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명칭 : 실무위원회) • 인원 명시 없음 •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추천 인사로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소위원회 설치가능)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 전담 인력으로 구성 • 필요시 공무원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 명칭 사무처 • 사무처장 1인 만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설치 없이 • 기재부에서 담당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계획과 정책 수립</u> • 이행 사항 및 부처 정책 심의 • <u>진흥원 원장 추천 · 거부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및 정책 심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계획 및 정책 심의, 조정

6. 사회적경제기금 - ①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금융원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중앙과 지방기금 설치 사회적금융기관(중개조직) 인증 및 지정	중앙과 지방기금 설치 사회적금융기관(중개조직) 인증 및 지정	중앙기금 설치
기금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산하 • 일부 업무 경제원에 위탁
	사경위 민간위원(1/3) + 전문가(나머지 위원 1/2 이상) 준수	위원장 및 위원은 민간 으로 구성. 1/2 이상	법률 명시 없음(령 위임)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법인, 단체출연금 • 사경 관련 정책기금 •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 미소금융, 복권기금 • 운용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법인, 단체 출연금 • 사경 관련 정책기금 •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 미소금융, 복권기금 • 운용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법인, 단체 출연금 • 사경 관련 정책기금 • 정부 출연금 • 지자체 출연금 • 운용 수익금
제도 정비	•농협, 신협 등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u>여신과 출자</u> 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정비	• 신협의 사회적경제조 직에 대한 여신 확대	• 없음

6. 사회적경제기금 - ②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긴급구제 • SE조직 금융지원 • SE촉진을 위한 투융자 • <u>지역정부기금에 대한 연계 지원</u> • 지역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강화 • 사회적금융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SE기업의 금융지원 • SE 기반조성 투융자 • SE 자본시장 조성 • 사회적금융 연구개발 • SE 홍보 및 행사와 시상 • 민간의 SE 촉진 및 중간 지원기관 활동의 지원 • 지역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SE조직의 금융지원 • SE 자본시장 조성 • 민간의 자발적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중개 기관	사회적금융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신협, 투자회사 등)	은행, 우체국, 법률에 따른 금융업무 수행기관,	명시 없음.
투자	인정 / 요건을 갖춘 중개 기관에 의해	인정	불인정

7. 사회적경제원과 전달체계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기관	설치	설치	설치
주무부서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지원센터	법률명시 없음 (경제원 정관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로 대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별도 지정	권역별 통합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별도 지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연구 • 데이터 총괄 • 등록, 인가, 인증 지정 • 분사무소 설치 • <u>당사자 조직의 필요</u> <u>사업 예산 배분</u>(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판로개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 정책 개발 • 모델발굴, 사업화 지원 • 모니터링 및 평가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용 • 생태계 조성 관련사업 • 국가 지차체 사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 교육 홍보 • 모델발굴, 창업 지원 • 설립인가 인증 지정 •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사 • 회가치 측정 • 기술지도 및 경영컨설팅 •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 국제협력

8. 사회적경제조직협의회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명칭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	사회적경제기업단체협의회	사회적경제조직협의회
범주	전국· 지역, 업종· 분야	전국· 지역, 업종· 분야	전국· 지역, 업종· 분야
구성	기업 + 기업연합 + 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위	명시 없음.	사회적경제기업의 전국단위는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단위 협의회는 지자체에 대해 정책파트너	명시 없음
보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사무 위탁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사무 위탁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사무 위탁

9. 우선구매, 국가 책무 및 계획 수립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우선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의무</u> * <u>이 의무의 실효성 확보와 사회적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법률 제정 의무 규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의무</u> • <u>그 외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성과 사회적공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함</u> * <u>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의 범위내에서 구매 의무 규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의무</u> * <u>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 규정</u>
국가 책무 및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가 책무: 사회적경제 발전 종합시책 수립(3년) 의무, 시책추진에 사회적경제조직 의견 반영 의무화</u> • <u>기본계획 수립주체: 사회적경제위원회</u> * <u>(중앙)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의무,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임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가 책무: 사회적경제 발전 종합시책 수립(5년) 의무</u> • <u>기본계획 수립주체: 기획재정부 장관</u> * <u>(중앙)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의무,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임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가 책무: 사회적경제 발전 종합시책 수립(5년) 의무</u> • <u>기본계획 수립주체: 기획재정부 장관</u> * <u>(중앙)사회적경제위원회: 의무,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의무</u>

10. 공개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기준	시행령으로		
운영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규약 등 • 주요 의결기구 의사록 • 회계내역 • 사업결산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규약, • 주요 의결기구 의사록 • 회계내역 • 사업결산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규약, • 주요 의결기구 의사록, • 회계장부
경영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규약, • 회계내역 • 사업결산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규약, • 주요 의결기구 의사록 • 회계내역 • 사업결산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규약, • 주요 의결기구 의사록 • 회계장부 • 사업결산보고서
외부감사	시행령에서 규정 (사업규모 + 그 외 기준)	일정 사업규모 이상	없음

11. 벌칙 또는 제한

	연대회의	새정연	새누리
명칭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조항으로 명시 • 사회적경제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없음
벌칙	경제원 임직원의 비밀 누설 다른 용도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경제원 임직원의 비밀누설 다른 용도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경제원 임직원의 비밀 누설 다른 용도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과태료	사회적경제원 유사명칭 사용자 500만원 이하	경제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유사명칭 사용자 500만원 이하	사회적경제원 유사명칭 사용자 500만원 이하

※ 지역 관련 연대회의 초안 총괄

조항	주요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사회적경제 시책 강구 •시책을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 반영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사회적경제 전략 추진계획 매년 수립·시행 •지역추진계획 수립, 변경 시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
제15조(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차원의 정책 수립, 시책 심의·조정,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구축
제18조(사회적경제조직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단위 또는 업종·분야 단위 협의회나 연합회 등 사회적경제조직간 연합조직 설립과 협의구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교육, 사업화·컨설팅, 판로개척, 연대사업 등 협의체의 직접 지원사업 명시
제21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별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사회적경제기금의 지역기금 연계 지원 명시 •지역기금의 사회적금융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 명시